

2015년 평창군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을 위한
군의회 의견 청취안

검 토 보 고 서



평 창 군 의 회

2015년 평창군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을 위한 군의회 의견 청취안
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9. 10.23 (금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9. 10. 26(월)
- 다. 상정일자 : 2009.10.26(월) 제165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3차 본회의

2. 제안이유

- 가. 평창군의 성장과 사회·경제 여건의 제변화에 대응하여 도시
잠재력과 제약요인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도시발전을 유도
하고,
- 나. 2020년 평창군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상위계획의 수용과
도시의 성장 및 미래의 도시 여건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
세부계획 수립이 필요하며,
- 다. 불합리하게 지정·관리되고 있는 용도지역·지구·구역, 지구단위
계획구역 및 군계획 시설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- 가. 입안내용
 - 용도지역 결정(변경) 22건
 - 용도지구 결정(변경) 18건(신설15건, 변경2건, 폐지1건)
 -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2건(폐지2건)
 - 군계획시설 결정(변경)140건(신설93건, 변경44건, 폐지
3건)

4. 검토결과

○ 본 의회의견 청취안은,

평창군의 개발가능용지를 확보하고 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불합리한 용도지역이나 군계획시설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으로

○ 위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

- 현재 고질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변경이나 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여론이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대부분 의견이 반영되었으며,
- 또한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자문 등 심의가 선행된 사항으로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,
- 다만, 추진과정에서 좀 더 세밀한 검토로 누락된 대상지는 없는지 등에 대한 신중한 추진이 필한 것으로 검토됨.